

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6월 20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5월 28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5월 28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6월 20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, 새마을장학금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지급·운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장학금의 종류 중 성적우수장학금 추가(안 제2조)
- 장학금의 지급대상 구체화(안 제3조제1항)
- 차액 지급 단서규정 신설(안 제3조제2항)
- 장학생 추천 및 선정 절차 정비
 - 구지회장의 장학생 최종 추천 규정 신설(안 제4조제2항 신설)
 - 장학생 선정 주체를 구지회에서 구청장으로 변경 및

중복 지급 확인 의무 신설(안 제5조)

- 장학생 선정 인원 구체화(안 제6조)

-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5조, 제9조, 제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, 새마을장학금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지급·운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- 본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
 - 안 제2조에서는 장학금 수혜자의 다양화를 위해, 성적이 우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격려하는 성적우수장학금을 신설하고
 - 안 제3조에서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‘지도자 경력 1년 이상’을 명시하고 기존 유공·특기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구체화 및 성적우수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신설함. 아울러 타 장학금이 본 새마을장학금 금액에 미달할 시, 그 차액을 새마을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신설함.
 - 안 제4조에서는 구지회장의 새마을장학생 최종 추천 규정을 신설하고
 - 안 제5조에서는 장학생 선정 주체를 구지회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선정된 장학생의 타 장학금 기수혜 여부를 해당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에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구청장의 장학금 중복지급 확인 의무를 신설함.

- 안 제6조에서는 장학금 선정 인원을 지도자 수의 '7% 이내'로 명시하고
-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.
-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, 새로 신설한 성적우수 장학생의 자격 요건 기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별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